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1

발의연월일: 2020. 6. 9.

발 의 자:김도읍·정점식·박덕흠

김정재・배준영・조수진

추경호 · 조해진 · 권명호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폭행 및 괴롭힘 등으로 인해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않아 지하실 또는 분리수거장 근처를 휴게시설로 이용하는가 하면 휴게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두고 입주민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근로자의 근무 여건이 심각하게 열악한 수준임.

이에 주택단지 건설 단계에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해 아파트 단지내 근로자들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3호).

법률 제 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가목 중 "주차장, 관리사무소"를 "주차장, 관리사무소(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부대시설"을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 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 또는 제3 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	13
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u>주차장, 관리사무소</u> , 담장	가. <u>주차장,</u> 관리사무소(경비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
	<u>다)</u>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14. ~ 29. (생 략)	14. ~ 29. (현행과 같음)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	
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부대시설</u> 의 설치기준	3. <u>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부대</u>
	<u>시설</u>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